

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형재 의원 외 17명
- 의안번호 : 제1528호
- 발의일자 : 2024년 2월 1일
-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코자,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가로등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3조9호).
- 나. 가로수의 식재 기준 중 ‘가로등의 위치’를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- 다. 가로등의 빛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는 즉시 가지치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- 라.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빛가림 방지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함(안 제11조).

##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가지가 도로 가로등 불빛을 가려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“가로수”는 현행 조례 제3조(정의)를 통해 경관조성 및 녹음제공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로와 가로변에 심기 때문에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 교통환경 또한 개선하도록 정의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(안 제7조제1호가목),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에 ‘가로등의 빛’을 새롭게 규정(안 제8조제3항)하는 한편, 가지치기 원칙에 빛가림 방지를 포함(안 제11조제1항)하는 것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8조제3항1)에서 ‘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’의 조건을 삭제하고 있으나, 안전시설물의 기능상 문제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한 후 가로수 관리청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이와 관련해 가로등 설치 이후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빛가림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당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.

1)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8조제3항 중 ‘도로표지와 가로등의 빛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’의 문구에서 ‘빛’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‘가로등’으로 표기하고 ‘안전시설물을 가리는’의 문구는 ‘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’으로 의미를 구체화<sup>2)</sup>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<u>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</u>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 도로표지와 가로등의 빛 ----- 가로수는 -----	③ -----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<u>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</u> -----

또한,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1항에 대해서도 통일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안 제11조제1항<sup>3)</sup>과 관련하여 가지치기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므로 ‘가로등’과 ‘빛가림 방지 등’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2) ‘가로등의 빛’과 관련하여 ‘도로표지’는 운전자가 표지판을 볼 수 있는 면 등 도로환경에 따른 종합적인 기능 및 표지판의 안전성 검토로 해석되는 만큼, 가로등(빛) 또한 기능 및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‘가리다’는 표현보다는 ‘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3) 제11조(가지치기)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, 아름다운 수형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, 통행 공간의 확보, 전승·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.